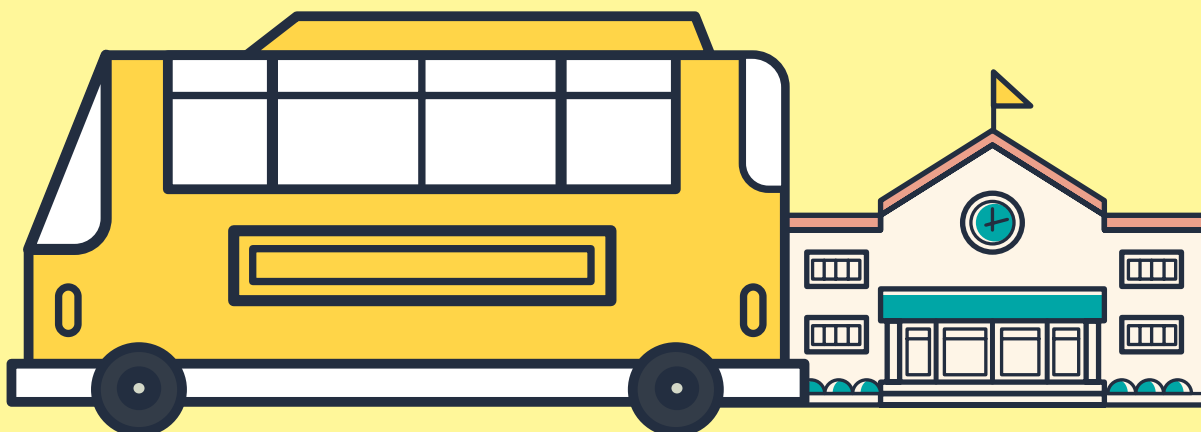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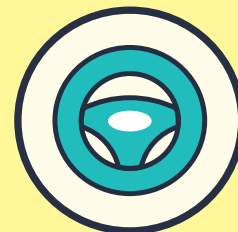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 매뉴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매뉴얼

일·러·두·기

본 매뉴얼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거점형늘봄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제23조에 따라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학교는 별도 배포한 ‘공립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도움 자료’를 우선 적용합니다.

제1장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 매뉴얼 개요

- 발간의 목적 2
- 발간의 배경 2
- 구성 내용 3

제2장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기본개념 및 요건

- 어린이통학버스란? 6
-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7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11
-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15

제3장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 대책

- 관계 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 18
-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22
- 학교안전지원시스템 등록 23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 24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및 안전요령 25

제4장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수칙

- 운전자 안전 수칙 30
- 운전자 안전 수칙 31
- 동승보호자 안전 수칙 34
- 승하차 어린이 안전 수칙 36

제5장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대응 절차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단계별 조치 사항 38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40
- 전기차 통학차량 안전 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44

제6장

참고자료(부록)

- 통학버스 업무담당자 및 교육부, 유관기관 연락처 48
- 관련 법규 49
- Q & A 68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매뉴얼



1장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 매뉴얼 개요



1장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 매뉴얼 개요



발간의 목적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자료 제공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활성화 및 업무 편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교에 제공함으로써 업무 경감에 기여
-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절차 및 조치 사항, 방법 등을 안내하여 신속한 사고 대응



발간의 배경

-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해 해당 운영교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안내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교 근무자가 인사발령에 따라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 업무의 경험이 없는 직원에게 도움이 되고자 업무 전개 절차와 관련 정보가 담긴 매뉴얼을 제공 - 통학버스 업무를 담당하면서 필요한 각종 서류와 양식 및 관련된 법 조문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통학버스의 안전관리와 업무 진행 절차 및 운영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고자 함



구성 내용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 매뉴얼은 발간 관련 목적과 배경을 제시한 1장을 제외하면 총 4개의 내용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음
 - **2장**은 통학버스 관련 기본개념 및 요건 등을 내용에 담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내용을 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제시함
 - **3장**은 통학버스 안전 관리 대책에 관해 통학버스의 안전 의무, 학교안전지원시스템 등록, 안전 점검, 안전 운전 요령 등을 내용에 담아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
 - **4장**은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탑승학생 등 대상별로 정리하여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학버스 안전 수칙들을 명시함
 - **5장**은 통학버스 사고 대응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사고 발생 시 체계도 및 조치 사항 및 사고 대응 절차, 또한, 전기차 통학버스가 도입되었을 경우의 안전 관리 및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사항 등을 정리함
 - **6장**은 참고 자료(부록)로 비상연락망, 관련법규, Q&A 등을 안내함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매뉴얼



2장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기본개념 및 요건





2장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기본개념 및 요건



어린이통학버스란?

- 어린이(13세 미만) 및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 ※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제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
- 어린이통학버스 대상 교육 시설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
-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방법

- 어린이통학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순	절차	관련기관 및 필요서류
1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 관할 경찰서 ▶ 필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학교(학원) 등기(등록).인가.신고서 사본 - 임차용역계약서(임차시) -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 - 안전교육확인증(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2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취득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관: 차량 소재지 관할 구청/시군구청 ▶ 필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차량 사진 등

● 신고증명서 비치

- 신고증명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함.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함.



참고 1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12. 31.>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차종(차명)		형식		
	등록번호	정원	제작연도		
보험 (공제) 가입	가입자		가입회사		
	배상한도	대인	대물		
차의 운행	운행 구간				
	운행 횟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1.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2. 학교(학원) 등기(등록) · 인가 · 신고서 사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등록증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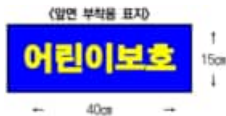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
-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항 각 목의 어린이교육시설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나목(회사는 제외한다) 및 제1호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
-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춘 자동차

● 어린이통학버스의 구조¹⁾

	항 목	내 용	적용시기	사진
1	정의 <제2조 제23호>	- 도로교통법(제2조 제23호)에 따른 시설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9인 이상인차	'08.01.14.~	-
2	색상 <제19조 제8항>	- 황색(스포일러 포함 / 천정에어컨, 몰딩 제외) ☞ (검사부적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7호다목	1997.08.25.~	-
3	어린이 보호표지 <제19조 제9항>	- 앞: 우측상단(150mm*400mm) / 뒤: 중앙하단(200mm*500mm) - 1mm 이상 아크릴,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탈부착형	1997.08.25.~	 <p><앞면></p>  <p><뒷면></p>  <p><앞면 부착용 표지></p>  <p><뒷면 부착용 표지></p>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2021. 5. 11.)



항 목	내 용	적용시기	사진	
4 정지표시 장치 (제19조 제10항)	-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작·튜닝한 자동차 - 차문이 열리면 장치가 펼쳐지며 적색 점멸등이 작동 (문이 열린 동안은 펼쳐진 상태 유지) -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 추가설치 가능 ☞ (검사부적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7호다목	튜닝: '14.2.21.~ 제작: '15.1.1.~		
5 좌석 (제25조 제2항)	- 가로·세로 각각 27cm 이상 - 앞좌석등받이 뒷면과 뒷좌석등받이 앞면간 거리 46cm 이상	'19.12.31. 까지		
	- 좌석규격: 가로 30cm, 세로 41.4cm 이상 - 등받이: 71cm 이상(머리지지대 포함) - 좌석간 거리: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 착석가능	'20.1.1.~		
6 접이식 좌석 (제25조의2)	- 외부에서 접이식좌석을 조작할 수 있어야 함	1999.02.19.~		
7 좌석안전띠 (제27조 제6항)	-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어야 함 ☞ (검사부적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5호 (안전띠 손상시)	1997.08.25.~		
8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제27조의2)	- 승용자동차에 설치, 2곳 이상 좌석에 설치(2열에 최소 1곳) - 도구없이 사용가능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10.1.15.~	ISO FIX	
9 승강구 (제29조 제1항 제4호)	- 1단: 높이 30cm 이하, 가로-승강구 유효너비 80% 이상, 세로- 20cm 이상 - 2단: 높이 20cm 이하(15인승 이하는 25cm 이하)	가로·세로너비기준은 '11.08.31.이전·이후 상이		
10 표시등 (제48조 제4항)	- 안쪽 황색 (정지 예정 시 운전자 조작에 의해 점멸 및 출발을 위해 승강구 닫을 시 자동으로 점멸) - 바깥쪽 적색 (승강구 열릴 시 자동으로 점멸) - 황색, 적색 동시점멸 금지 ☞ (검사부적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제12호라목	'09.06.09.~ (개정-제5호 각목)		
11 간접 시계장치 (제50조 제2~3항)	- 좌·우 광각 후사경 설치 - 차체 바로 앞 장애물 확인 가능한 간접시계장치 설치 (원동기가 운전석 앞쪽에 위치한 자동차 제외)	'17.01.09.~		
12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제53조의2)	- 후방영상장치: 관측영역 조건 존재(규칙 참고)	'14.2.21.~ 택1 설치		
	-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후진 시 경고음 반복 알림(보행자용)			'19.7.1. ~ 둘다 설치
	-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후방보행자 접근 감지 알림(운전자용)			선택

항 목	내 용	적용시기	사진
13 하차확인장치 (제53조의4)	- 시동 끄고 3분 이내 경고음(경적)·표시등(비상등) 작동 - 확인버튼 누름 또는 재시동 시 경고음 등 작동 정지 - 장치보호 목적으로 볼 수 없는 퓨즈 설치, 별도의 OFF스위치 설치, 안전벨트 스위치 연동, 대형승합자동차의 메인스위치와 연결 등은 금지 - 경고음은 앞 또는 뒤 2m에서 측정 시 60dB(A) 이상 ☞ (검사부적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7호	'19.4.17. 시행 (기존차량도 의무설치)	
14 최고속도 제한장치 (제54조 제2항)	-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작·튜닝한 자동차 - 승합자동차인 경우, 기준일자와 관계없이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 필 ☞ (검사부적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3호	'19.11.15.~	전문 진단장비로 OBD 단자에 연결하여 확인
15 운행기록장치 (제56조) 교통안전법 제55조	- 여객사업용 자동차는 시행일과 관계없이 의무설치 - 설치 및 정상작동여부(전원, 속도, rpm 등) 확인 ☞ (검사부적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3호	'21.1.1.~ (시행일 이전 신고·운영중인 차량은 23.1.1.부터)	
16 창유리 썬팅 (제94조 제3항)	-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 (검사부적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8호	'21.4.17. 시행 (기존차량도 적용)	

※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시 자동차 검사 부적합 및 불법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즉시 처리됨

- 차량의 구조·장치 변경시 변경된 구조·장치 관련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 (구조변경 승인신청서, 구조변경 전후 제원대비표, 구조변경 전후 자동차외관도, 구조장치 설계도)



●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장치

구 분	유 형	세 부 내 용
하차확인장치 ²⁾	안전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시동을 끈 상태에서 자신의 위급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음향장치가 울리고 경광등 또는 비상등을 깜빡이게 하는 장치 작동조건: 3세 이상 모든 유아 또는 학생이 누를 수 있어야 하며 유아(학생)이 스스로 작동을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설치 설치위치: 유아(학생)이 자주 지나가는 통로 또는 출입구 등 유아 등의 눈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좌석확인벨 (하차확인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시동을 끈 상태에서 경광등이 깜박이며 운전석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고, 차량 맨 뒷좌석에 있는 벨을 누르면 경광등과 운전석 경고음이 꺼지는 장치 작동조건: 시동을 끄면 경광등(또는 비상등)이 깜박이고, 운전석 경고음이 울리며, 차량 맨 뒷좌석의 좌석확인벨을 누르면 경고음과 경광등의 깜박임이 멈춤 설치위치: 차량의 맨 뒷 좌석
	동작감지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시동을 끈 상태에서 학생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음향장치가 울리고, 경광등(또는 차량 비상등)을 깜박이게 하여 자신의 위급상황을 알리는 장치 작동조건: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음향장치와 경광등 등에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음향장치와 경광등 작동 설치위치: 운전자 좌석 제외 동작 감지센서가 차량 내 모든 곳을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운행기록장치	Digital Tacho Grap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의 속도, 엔진 회전 수, 위치(GPS) 등을 통해 위치, 가속도, 주행 거리, 시간 등을 자동적, 주기적으로 기억장치에 기록 자동차의 운행관리, 운전자 교육·훈련, 운행계통 및 운행 경로 개선, 운영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 수립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

※ 하차확인장치 주요 위반행위 유형

- ① 어린이 하차 후 장치 미작동
- ② 운전석에서 리모컨으로 작동
- ③ 하차확인장치 이음선 등을 절단
- ④ 뒷좌석 어린이에게 장치를 대신 작동하게 하는 행위 등

2)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제5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 전국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³⁾(2019~2023)

연도	사고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2019	17	0	38
2020	12	0	20
2021	10	0	18
2022	21	1	44
2023	23	0	64

● 사고의 주요 원인

- 운전자 법규위반 :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 안전관리 미흡 : 안전벨트 미착용, 승하차시 안전 확인 부재, 차내 탑승안전 지도 미흡 등
- 차량관리 소홀 : 안전장비 미비, 차량 정기점검 미 실시 등

● 주요 사고 유형

유형	주요 사고	사고 사례
승하차 관련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가 버스에서 내리거나 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 운전자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 • 옷이나 신체 일부가 차량 문에 끼이는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하차 중 발판을 헛디딤 넘어지면서 부상 • 승하차 중 출발하여 어린이가 차도로 넘어지면서 부상 • 승하차 중 출발하다 차도로 넘어진 어린이가 버스 앞바퀴에 깔려 사망 • 통학버스에서 하차 후 차량 주변을 벗어나지 않고 머물고 있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 • 통학버스에서 내리던 중 옷이 문에 끼였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차량에 깔려 사망
주행중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 외부차량과 어린이 신체가 부딪히는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제동하여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어린이가 버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 •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어린이가 창문 밖으로 팔을 내밀어 옆 차량에 부딪혀 부상

3) 자료출처 : 경찰청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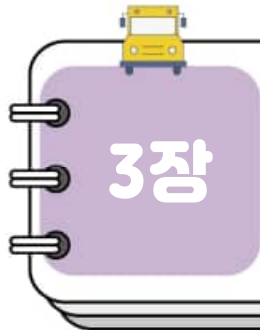
유 형	주요 사고	사고 사례
보행자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주변에서 어린이가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 • 운전자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충돌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가 길 건너편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 갑자기 도로 위로 뛰어들다 달려오던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 • 어린이가 통학버스의 운전석 쪽 앞으로 가는 것을 운전자가 보지 못하고 출발하여 사망
안전장치 미착용 관련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정차 전 하차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서 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부상
하차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차 확인 등 운전자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버스에 갇혀 있던 어린이 2시간 만에 구조 • 폭염 속 통학버스에 7시간 방치된 어린이 사망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 • 졸음으로 인한 사고 • 운전자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던 중 전방 차량을 추돌하여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 부상 •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가 3m 아래 논으로 추락하여 어린이 부상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어린이를 충격하여 부상 • 빗길에 통학버스가 미끄러져 전도되어 탑승 어린이 부상



3장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 대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 대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 매뉴얼



관계 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

●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현황

- 서울시 관내 학교 중 544교에서 1,660대 운영 중

(‘25. 9월 기준, 단위: 대, 교(원))

구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강서 양천	강남 서초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강북	계
유치원*	70 (34)	104 (44)	85 (48)	88 (45)	52 (25)	126 (44)	124 (51)	72 (29)	53 (28)	72 (26)	83 (37)	929 (411)
초등학교	61 (10)	90 (13)	17 (7)	78 (10)	49 (13)	8 (4)	21 (6)	16 (7)	12 (4)	56 (9)	84 (8)	492 (91)
특수학교	-	11 (3)	12 (2)	16 (3)	10 (4)	12 (4)	6 (2)	17 (4)	11 (4)	4 (1)	15 (5)	114 (32)
외국인 학교	-	42 (3)	-	13 (1)	24 (2)	-	-	33 (2)	-	12 (1)	-	124 (9)
거점형 늘봄센터					1 (1)							1 (1)
계	131 (44)	247 (63)	114 (57)	195 (59)	136 (45)	146 (52)	151 (59)	138 (42)	76 (36)	144 (37)	182 (50)	1,660 (544)

※ 괄호() 안은 기관 수 / * 유아교육진흥원 포함

● 점검시기: 상·하반기 2회

● 점검대상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거점형늘봄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제23조에 따라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체 통학버스의 10% 내외

● 실시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 **점검방법: 교육지원청별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현행화 및 현장점검**

- ※ (사전 안내) 합동점검 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없도록 안내하고, 사전에 수리 완료하도록 독려
- 1단계: 교육지원청 전체 운영기관의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정보 등록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운영 현황 점검
 - 2단계: 교육지원청 시스템 점검 결과 미비한 기관 합동 현장점검
 - 3단계: 교육청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등록 자료 및 점검 결과 일치 여부 확인 등 전반적인 내용 검토

● **점검항목**

점검기관	점검항목
합동 점검	① 통학버스 신고(법 제52조 제1항) -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등을 위해 통학 등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
	② 통학버스 요건 구비(법 제52조 제3항) -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 등을 확인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어린이보호표지) 통학버스 앞면 우측 상단,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탈부착 여부 ※ 어린이가 승차하여 운행할 때에만 어린이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함 - (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 가능한 보험
	③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법 제53조 제7항) -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 시설 인·허가권자: 어린이집(기초지자체장),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교육감 ※ 학교안전지원시스템(https://www.schoolsafe24.or.kr/)에서 확인
	④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실시 의무 (법 제53조의3) - 통학버스의 운영자·운전자·동승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 - 신규교육(통학버스 운영·운전하기 전), 정기교육은 2년마다 재교육 ※ 학교안전지원시스템(https://www.schoolsafe24.or.kr/)에서 확인
	⑤ 학교 안팎의 거점형 놀봄센터 통학버스 운영 실태 점검 - 적극행정으로 통학버스 신고 대상이 아닌 거점형 놀봄센터의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실태 점검 및 활성화 여건 조성
경찰서 협조	⑥ (경찰서) 통학버스 특별보호 등 위반 계도·단속(법 제51조) -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통학버스 정차한 차로와 그 옆차로 통행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 -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하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⑦ (경찰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 미설치된 횡단보도 앞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위반 계도·단속(법 제27조 제7항)



참고 1

어린이통학버스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 기관명:

점검 사항	점검 내용	적합 여부		비고
		적합	부적합	
신고여부	▶미신고 운행 여부 ▶신고증명서 비치 여부			
종합보험 가입여부	▶종합보험 가입여부 ※ 보험가입 증명서 등 확인			
안전교육 이수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 기간 경과 여부 - 운전자 교체에 따른 미이수 여부			
동승보호자 탑승여부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차량 구조장치 안전여부	▶어린이보호표지			
	▶정지표시장치			
	▶좌석			
	▶좌석 안전띠			
	▶좌석 부착장치			
	▶승강구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후방보행자안전장치			
	▶하차확인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기타(선풍 등)				
안전운행기록 작성여부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 - 매 분기 제출 여부			

2026. . .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참고 2

지적사항 시정여부 확인 대장

□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점검 일자: '26.00.00.

순	기관명	지적 내용	처분 내용	시정 결과 (확인날짜)	사진
1	○○초등학교	안전벨트 불량	예시) ·과태료 30만원 ·원상복구명령* ·현지조치	과태료 납부 및 원상복구 완료 (‘26.10.5.)	
2	△△유치원	창유리 썬팅 불량			
3					
4					
5					
6					
7					

* 「원상복구명령」은 정식 고지서 발행을 통해 이루어진 명령에 한함

제 3 장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구분	안전의무	비고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정기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교육방법 및 내용

- 강의 및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비고
강의 및 시청각	▶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 그 밖에 운전 및 승차·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학교안전지원시스템 등록

● 개요

- 통학버스의 기본 정보를 비롯하여 운영자·운전자·동승자 교육수료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보험가입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http://schoolsafe24.or.kr>)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기관 중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학원, 교습소,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거점형 놀봄센터에 해당하는 시설만 등록 가능

● 조사항목

기관	항목	입력내용
기관 정보	14	고유등록번호(사업자번호), 작성자, 기관구분, 설립구분, 시도구분, 교육지원청, 기관명,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홈페이지, 현원(명), 정원(명)
차량 정보	32	자동차등록번호, 승인구분, 소유자 성명, 등록연월일, 차종, 제작연도, 차종구분, 승차정원, 제작사, 구조변경일, 가입보험종류, 가입회사, 가입자, 피보험자, 배상한도대인, 배상한도대물, 특약사항, 통학버스신고 여부, 미신고 사유, 신고일자, 신고필증번호, 관할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유상운송신고, 허가일자, 관할기관 시도, 시군구, 유아용보호장구유무, 유아용 보호장구수량, 어린이·영유아용 좌석안전띠 유무, 어린이·영유아용 좌석안전띠 수량, DTG*설치 여부
운영자 정보	6	운영자 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 여부, 교육이수번호, 교육이수증, 휴대전화번호
운전자 정보	4	성명, 교육수료 여부, 교육이수번호, 교육이수증
동승자 정보	4	성명, 교육수료 여부, 교육이수번호, 교육이수증

* DTG(Digital Tacho Graph, 디지털운행기록장치)

● 시스템 입력 확인 절차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

구분	위반내용(「도로교통법」: 약칭‘법’)	처벌기준
통학버스 운영자	▷ 미신고 운행(법 제52조제1항)	과태료 30만원 (법 제160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법 제52조제3항) *자동차안전기준[자동차규칙]에서 정한 구조 *구조 및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법 제53조제3항)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법 제154조)
	▷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법 제53조제6항)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법 제52조제2항)	과태료 3만원 (법 제160조)
	▷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법 제53조의3) ※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	과태료 8만원 (법 제160조)
	▷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법 제53조제7항)	
통학버스 운전자	▷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법 제53조제1항)	범칙금 13만원 (승합차 기준) (법 제156조) 벌점 30점
	▷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법 제53조제2항)	
	▷ 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법 제53조제4항)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법 제154조) 벌점 30점
	▷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법 제53조제5항)	
	▷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법 제53조제2항)	과태료 6만원 (법 제160조)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및 안전요령

구분	안전의무	비고
운영자	▷ 정기안전점검(연 1회)	
	▷ 안전확보(통학버스 요건 수시점검)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	[참고2]
	▷ 부책 비치(운행일지, 노선도 등) 중요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 -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기록 - 매 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 제출 ※ 학교안전지원시스템 이용, www.schoolsafe24.or.kr	[참고1]
	▷ 주차 공간 및 시설 확보	
	▷ 통학차량 표시(색상, 관리기관명, 신고필증, 보호자 동승 등)	
운전자	▷ 차량운행일지 매일 기록	
	▷ 안전확보(통학버스 요건 수시점검)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	[참고3]
	▷ 통학노선 자의적 미변경 및 탑승정원 초과 미운행	
	▷ 급출발, 급정차, 급가감속, 급핸들 조작 등 금지	
	▷ 빗길, 겨울철 눈길, 교차로 등 법적 최고 속도에서 20~50% 감속운행	
	▷ 하차시 주위 안전 확인하고 완전정차 후 차문 개방	
	▷ 운행종료 후 차량 내부 반드시 확인	
동승보호자	▷ (승차시) 안전한 장소 승차, 어린이의 경우 안전띠 착용, 서서히 출발 안내	
	▷ (운행중) 안전띠 수시확인, 차량내 안전지도	
	▷ (하차시)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 지도, 차안 내부 잔여 인원여부 확인	
어린이	▷ (승차시) 뛰기 않기, 가방은 어깨에 메기, 되도록 끈 없는 옷 입기	
	▷ (운행중) 안전띠 착용	
	▷ (하차시) 차량 멈춘 뒤 안전손잡이 잡고 천천히 이동	



참고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20. 11. 27.>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운행연월 20 . .
성명 (운전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종(차명)					교육시설명					
차량등록번호					정원			제작연도		
좌석 안전띠 착용	월일									
	여부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월일									
	여부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53조7항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합니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체크리스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운영자용 체크리스트(월)

번호	목록	내용	점검여부	
1	보호자 탑승	통학버스 운행 시 반드시 학생을 보호할 보호자가 탑승하여 학생들의 승·하차를 지도한다.		
2	통학버스 운행노선도 및 운행시간표	통학버스 운행노선도 및 시간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3	통학버스 하차점검	마지막 하차 학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4	통학버스 운행시간	운전자와 학생에게 무리되지 않는 운행시간을 설정한다.		
5	안전한 승하차 장소	통학버스에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장소와 학생 대기장소를 마련한다.		
		주·정차 금지 장소 여부를 확인한다.		
		횡단하지 않는 곳에서 승·하차를 지도한다. 승·하차 후 횡단 시 동승보호자의 도움을 받는다.		
6	위험구간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대해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와 공유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7	안전교육 실시	운전자, 동승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8	신고증명서 및 교육확인증	차량 내부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교육시설 내부에 운영자교육 확인증을 비치한다.		
	점검일자	2000년 00월 00일	점검자	



참고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체크리스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운전자용 체크리스트(월)

번호	목록	내용	점검여부
1	차량의 기록, 유지현황 점검	운행일지, 유류대장, 수리대장을 비치하여 작성한다.	
2	차량 내 안전수칙 부착여부	통학버스 내 통학버스 안전수칙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한다.	
3	차량점검	어린이통학버스 경광등을 비롯하여 각종 등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타이어 상태는 운행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한다.	
		브레이크 작동상태는 상시 점검하여 안전한 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후방 영상장치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4	차량 내 안전장비 비치여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응급도구함을 비치하고, 구급상자에는 응급상황 시 비상연락망을 부착한다.	
		차량화재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	
		통학버스 내에 화재 또는 사고로 인한 출입문이 미작동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탈출용 망치를 통학버스 내부에 비치한다.	
5	차량 내 불필요한 물건	학생안전을 위해 차량 내 불필요한 물건이나 날카로운 물건은 적재하지 않는다.	
6	안전벨트 점검	안전벨트부착상태와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7	교통법규 준수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다.	
8	출발 전 확인사항	승차한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맨후 출발한다.	
9	하차여부 확인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고 어린이 하차를 확인한다.	
10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 내부에 운전자 교육확인증을 비치한다.	
	점검일자	2000년 00월 00일	점검자




4장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수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 매뉴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 매뉴얼

4장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수칙



운영자 안전 수칙

● 기본 수칙

-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임차 운행 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신뢰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무성을 가진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증 유무를 파악하며 어린이통학버스 임차 운행 시 적절한 좌석 안전띠가 구비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운영자는 차량에 적절한 휠체어 진입 및 고정 장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동승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
- 정확한 승하차 시간을 학부모에게 알려 운전자가 조금하게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있어서도 안전을 위해 여유 있게 운행 시간을 조정한다.)
- 길을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한다.
- 운영자뿐 아니라 운전자나 동승보호자의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인다.
- 경사진 곳에 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춘다.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영자 대처 요령

- 운영자는 사고 소식을 들으면 신속히 상황 파악을 하고 탑승자 명단을 확보하여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있으면 우선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상급 기관 등에 상황을 보고한다.



● 하차 시 주의사항

- 어린이통학버스를 인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한다.
- 하차한 어린이가 무단횡단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시에는 안전을 확인한 후 차 문을 연다.
- 하차 시 안전에 유의하게 하고 어린이의 경우 동승보호자 등 성인의 도움을 받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 동승보호자가 먼저 내린 후 학생의 하차를 돕는다.
- 동승보호자는 이륜자동차나 자전거가 오는지 뒤쪽을 살핀다.
- 자동차량의 경우 기어를 파킹에 놓고 수동차량의 경우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린 후 동승보호자에게 알린다.
-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다.
(반대편 길을 건널 경우 동승보호자가 함께 건넌다.)
- **중요** 운행 종료 후에는 어린이통학버스 내에 어린이가 있는지 제일 뒷자리 바닥까지 반드시 확인하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눌러 작동을 종료한다.
- 하차 후 출발 전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주위를 확인 후 출발한다.

● 통학버스 이용 시 장애 유형별 고려 사항

- 시각장애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승하차 시 인도에 가깝게 정차한다.
- 시각장애학생에게는 음성으로 의사소통을 고려하여 분명하고 정확한 문장을 사용한다.
- 시각장애학생에게는 달라지는 주변 환경에 대해 음성으로 설명한다.
- 청각장애학생에게는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고, 얼굴을 보면서 대화한다.
- 발달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익숙한 좌석을 지정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 휠체어 이동 장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승하차 시 고정한다.

휠체어 고정방법

- ① 휠체어를 휠체어 고정 장치 일직선에 바로 놓기
- ② 앞쪽 고정시키는 앞바퀴 기동 상단에 돌려서 감아 고정시키기
- ③ 뒤쪽 고정 장치는 일직선 또는 사선으로 뒷바퀴 상단 부분에 고정시키기
- ④ 휠체어 바퀴 손잡이 부분은 통학버스 내 옆 보조 안전띠에 고정시키기
- ⑤ 휠체어 고정 후 안전 유무를 흔들어서 확인하기
- ⑥ 중앙통로의 휠체어는 고정 장치를 고정한 후 옆 휠체어와 끈으로 묶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 ⑦ 운전 중이라도 고정 장치, 띠가 느슨해질 수 있으므로 재확인하기



출처: 학생안전 매뉴얼 발췌, 서울시교육청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대처 요령

-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즉시 알린다.
- 학생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즉시 정차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차를 정차시킨다.
- 부상자를 확인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응급 구조요원이 사고현장에 도착하면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서 전문 구급요원이나 의사 등의 도움을 받는다.
- 후속 사고 방지를 위해 비상등을 켜고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며, 야간에 고장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등을 추가한다.
- 안전삼각대가 없을 때에는 차 뒤 트렁크를 열어 놓는다.
- 경찰공무원에게 신속히 신고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Tip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에게 통행을 양보하여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진행하여야 한다.
- 우회전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동승보호자 안전 수칙

● 기본 수칙

- 어린이는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상 주위를 살핀다.
- 어린이는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멀미약은 부모의 사전 승인을 받은 어린이에게만 제공해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들이 차량 내 비상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승차 시 주의사항

- 어린이통학버스가 인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한 것을 확인한다.
- 어린이통학버스가 안전하게 정차하면 어린이통학버스에서 하차하여 어린이를 차례로 탑승시킨다.
- 승차 전에 어린이들의 옷을 단정하게 해주고 탑승시킨다.
- 좌석에 앉힌 후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스스로 맬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를 도와 좌석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 어린이가 창유리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한다.
- 모든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했는지 확인한다.
- 모두 승차하면 직접 문을 닫거나 운전자에게 알린다.
- 운전자에게 알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한다.
- 어린이가 차에서 내린 후 무단횡단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어린이 좌석안전띠 매주기 Tip

- 좌석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자세를 바르게 한 상태로 의자 깊숙이 앉는다.
- 좌석안전띠가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좌석안전띠 착용 버튼이 찰칵 소리가 나도록 단단히 잠근다.
- 한 사람당 한 개의 좌석안전띠를 맨다.
- 허리띠는 골반에 어깨띠는 어깨 중앙에 걸치도록 맨다.

● **운행 시 주의사항**

- 어린이가 맨 좌석안전띠가 풀리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 어린이의 좌석안전띠가 풀린 경우 즉시 다시 착용하도록 안내를 한다.
- 어린이가 창유리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한다.

● **하차 시 주의사항**

- 어린이통학버스가 인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한 것을 확인한다.
- 좌석안전띠를 풀 수 있도록 안내하며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는 도와준다.
- 이륜자동차, 자전거 등 위험 상황이 있는지 살핀 후 하차한다.
- 동승보호자가 먼저 하차한 후 어린이가 차례로 하차하도록 한다.
- 어린이를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하차한 어린이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보호자가 함께 건넌다.)
- 하차한 어린이가 인도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다.
- 출발하기 전 어린이통학버스의 앞·뒤·옆에 넘어지거나 무단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중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을 종료할 때에는 차 안에 남겨진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울 때는 어린이 혼자 어린이통학버스에 있지 않도록 한다.
- 차문을 닫거나 운전자에게 알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동승보호자의 대처 요령**

- 부상을 당한 어린이가 있는지 신속히 파악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어린이를 안전하게 하차시키고 인도나 도로 밖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
- 경찰공무원이나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고 인원 파악을 철저히 한다.
-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즉시 알린다.
- 사고 어린이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 사고현장이나 후송차량에 어린이만 남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동승보호자가 실시하는 어린이 안전교육 Tip

- 동승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차량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도로나 건널목 등 장소에서 놀지 않도록 지도한다.
-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는 집에서부터 1km의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등하원길, 놀이터 가는 길 등의 장소를 사전에 안내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알려준다.
- 동승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좌우를 살핀 후 길을 건너도록 교육하며 익숙해질 때까지 다양한 체험교육을 활용하여 반복하여 지도한다.



승하차 어린이 안전 수칙

※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안전 관련 내용으로 안전교육 시 필요한 사항임

● 승차 시 주의사항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착하기 5분 전에 버스 정류장에 나가 있으며 버스 주변에서 절대 뛰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지점에서는 차도에서 떨어져서 안전한 곳에서 기다린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기다리는 곳은 뛰거나 노는 곳이 아니므로 안전하게 기다린다.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할 때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기다리며, 정지표시장치가 작동하고 적색표시등이 점멸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에 탈 때는 손잡이를 잡고 타며 앞 사람을 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신속하게 제대로 자리에 앉아 앞을 바라보며 정해진 자리에 앉는다.
- 자리에 앉으면 바로 좌석안전띠를 매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승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운행 중 주의사항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좌석안전띠를 풀지 않는다.
- 물건이나 신체의 일부분을 창밖에 내놓지 않는다.
- 어린이통학버스 안 또는 밖으로 물건을 던지지 않는다.
- 항상 운전자 또는 동승보호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하차 시 주의사항

- 어린이통학버스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자리에 앉는다.
- 어린이통학버스가 완전히 정지한 후 좌석안전띠를 푼다.
-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시 앞에 앉은 사람부터 손잡이를 잡고 내리며 앞에 사람을 밀지 않는다.
- 하차 후에 어린이통학버스 근처에서 물건을 떨어뜨렸을 경우 줍지 않고 운전자 또는 동승보호자 등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5장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대응 절차





5장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대응 절차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단계별 조치 사항

● 사고 발생 시 단계별 조치 사항



1단계
예방 대비

▶ 학교 주변 안전 대책 검토

- 학교 밖 교통사고 다발지역 방문 및 사고발생 원인 등 현장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불량시 지자체, 경찰서에 복구요청)
- 학교 주변 횡단보도, 신호등, 중앙분리대, 보호 난간 및 방지턱 등 안전장치 적정 유무 정기적 확인

▶ 비상 연락 체계 구축

-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담당자 비상 연락망 구축

▶ 현장 지도 및 실습 등 교통사고 예방 교육

- 학생 등·하교 안전 지도 추진
- 잠재적인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올바른 대처 기술 습득

▶ 상시적으로 통학버스 음주 여부 측정



2단계
대응
교통사고 발생 시

▶ 119 신고 여부 및 학생 후송 여부 확인

- ▶ 학생 치료 담당 병원 위치, 전화번호 등 파악
- ▶ 학부모 및 학교장에게 신속 연락
- ▶ 경찰서 신고 및 신고여부, 담당 경찰관 등 파악
- ▶ 사고 발생 시간, 장소, 목적자 여부와 사고 경위 등을 파악



3단계
보고 및 복구

▶ 사고 발생 경위 및 사고 후 현재 상황 내용 작성(당시 상황, 사고 처리 및 학생 상태 등을 포함) 및 교육청 보고

- ▶ 가해자 보험(책임, 종합)가입 여부 확인 등 학생 지원 대책 모색
- ▶ 교통사고 피해 학생 수업 결손 보완 방안 강구
-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학생 교육 및 재발 방지
- ▶ 필요시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 통학버스 사고 및 재난시 대응 행동 요령



① 버스 탈출하기

- 차량 안이 위험할 때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비상탈출용 망치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고 탈출하기



②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 교사 혹은 교직원(운전자, 자원인력)의 지시에 따라
버스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③ 버스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기

- 버스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2차 사고가 있을 수 있으
므로 버스에 가까이 가지 않기



④ 교사 혹은 교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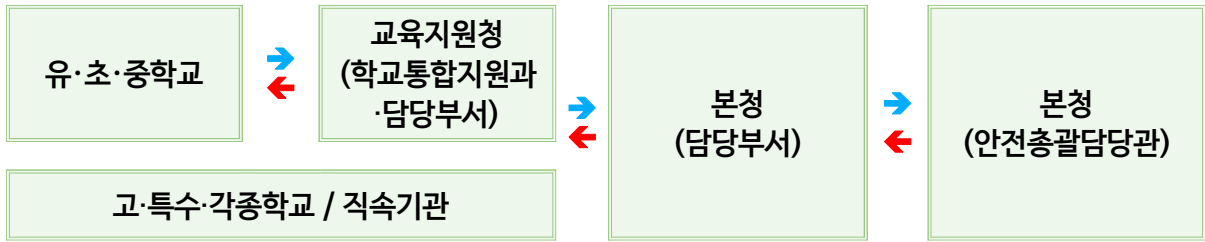
- 교사 혹은 교직원(운전자, 자원인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

출처: 학생안전 매뉴얼 발췌, 서울시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 근거: 2026 교육안전 종합계획
- 상황 보고 체계



- 학교 안전사고 대응 절차

	일반상해사고		생명위급사고
	병원치료 불필요시	병원치료 필요시	응급환자 발생시
1 상황파악 전파	교직원에게 상황전달	교직원에게 상황전달	최초 발견자 즉시 119 신고
2 안전조치	현장 응급처치 시행	현장 응급처치/ 병원이동 및 이송	응급처치 시행/ 병원이동 및 이송
3 상황정리	주의사항 안내 (환자)	보호자 인계 상황 등 파악	치료경과 파악 보호자에게 인계
4 보고조치 (사고통지)	학교장 보고	교육청(지원청) 보고/ 공제회 사고 통지/ 학생 등 공제 급여 신청 절차 안내*	교육청(지원청) 보고/ 공제회 사고 통지/ 학생 등 공제 급여 신청 절차 안내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 사업 안내

- 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 공제가입자(학교장)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함



붙임 1

통학버스 사고상황 보고(예시)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초등학교



수신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과장)

(경유)

제목 ○○초등학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상황 보고

1. 관련: ○○과-000(2026. 0. 0.)

2. 2026.0.0.(0요일) 08:30경 발생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상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사고상황 보고 1부. 끝.

○○○ 학교장

담당자 ☆☆☆

교감/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초등학교-6548 (2026. 0. 0.) 접수 ○○과-13441 (2026. 0. 0.)

우 30151 서울특별시 00대로 2154 (00동) / http://www.sen.go.kr

전화 02-000-000 /전송 02-000-000 / 비공개(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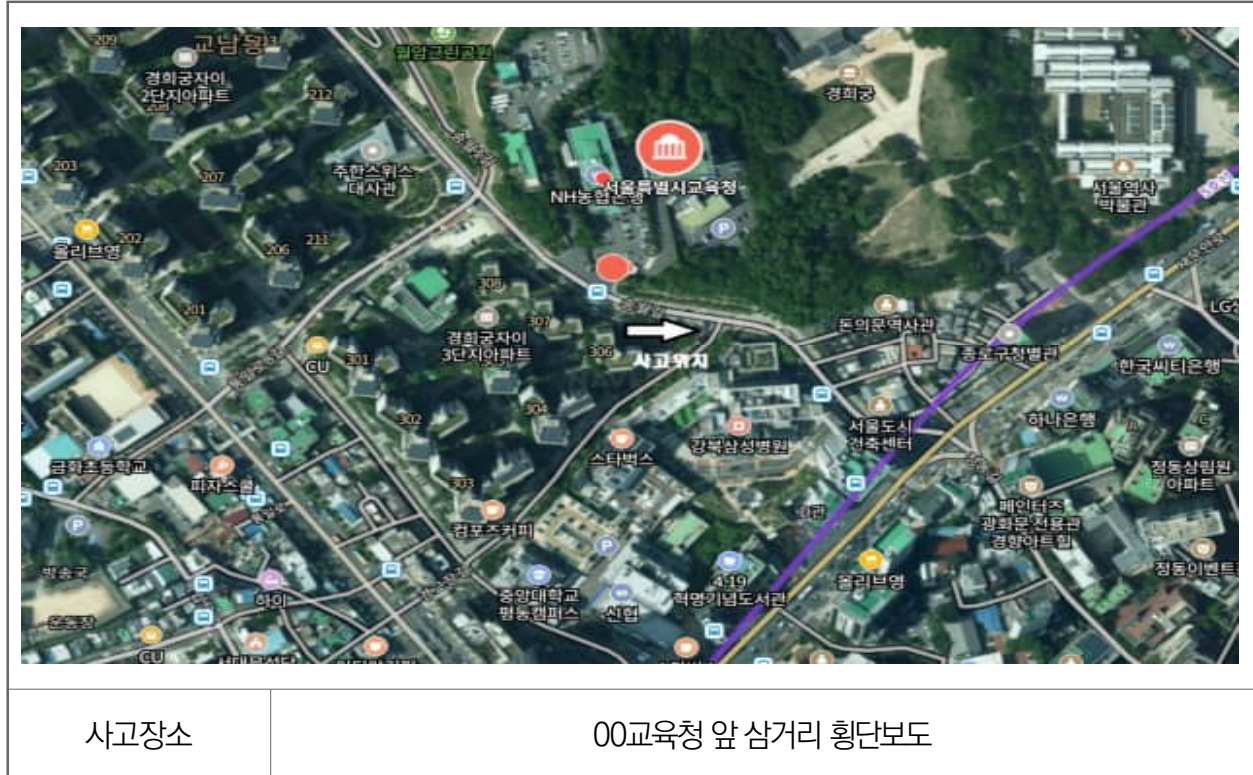
[붙임]

○○ 학교 ○○ 발생 상황 보고(예시)

기관명	00초	작성자	000	전화번호: E-mail:																						
<p>1. 발생개요</p> <p>가. 발생일시(기간): '25. 0. 0.(월) 08:30경</p> <p>나. 발생장소: 서울시 00구 00동 00삼거리(00초 앞)</p> <p>다. 발생사유: 00에서 학생 탑승 후 00아파트 삼거리를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신호위반하여 돌진하는 화물 트럭을 피하려다 측면 충돌하고 차량 전복됨</p> <p>2. 초동대응 및 경과</p> <p>가. 119 최초 신고, 학교장 보고, 교육청 보고(당직실, 통학버스 담당자)</p> <p>나. 교직원 비상소집, 사고 현장 출동(학교장, 교무부장, 행정실장)</p> <p>다. 탑승학생 명단 파악 및 신원확인 중</p> <p>3. 피해상황</p> <p>가. 인명피해: 탑승 31명(경상자 5명 구조)</p> <p style="margin-left: 20px;">- 탑승자 대부분 중경상으로 추측되나, 저학년 학생의 부상 정도가 심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left: 2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10%;">인원</th> <th style="width: 45%;">내용</th> <th style="width: 3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초등학생</td> <td style="text-align: center;">29</td> <td>1학년(23명), 2학년(3명), 3학년(2명), 5학년(1명)</td>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middle;">경상자 학생 5명 구조 후 00병원 이송 후 치료 중</td> </tr> <tr> <td>동승보호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통학안전요원</td> </tr> <tr> <td>운전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주)○○관광 소속 직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31</td> <td></td> <td></td> </tr> </tbody> </table> <p>나. 시설피해: 해당없음</p> <p>4. 향후 추진 계획</p> <p>가. 피해 학생별 치료 현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지원 대책 마련</p> <p>나. 사고 수습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p> <p>○ 재난에 따른 학생 수업 관련 조치 현황(등.하교 시간조정, 휴업/휴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left: 20px;"> <thead> <tr> <th style="width: 70%;">조치사항</th> <th style="width: 3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하교 시간 조정(오전 수업만 진행)</td> <td></td> </tr> </tbody> </table> <p>※ 조치사항은 등.하교 시간조정, 휴업, 휴교 등으로 작성(별지 작성 가능) - 등.하교 시간조정의 경우 구체적인 시간 작성(예: 등교시간 8시→10시로 조정)</p> <p>○ 기타 특이사항: 언론 보도(00언론사, 2025. 0. 00.)</p>					구분	인원	내용	비고	초등학생	29	1학년(23명), 2학년(3명), 3학년(2명), 5학년(1명)	경상자 학생 5명 구조 후 00병원 이송 후 치료 중	동승보호자	1	통학안전요원	운전원	1	(주)○○관광 소속 직원	계	31			조치사항	비고	하교 시간 조정(오전 수업만 진행)	
구분	인원	내용	비고																							
초등학생	29	1학년(23명), 2학년(3명), 3학년(2명), 5학년(1명)	경상자 학생 5명 구조 후 00병원 이송 후 치료 중																							
동승보호자	1	통학안전요원																								
운전원	1	(주)○○관광 소속 직원																								
계	31																									
조치사항	비고																									
하교 시간 조정(오전 수업만 진행)																										

[첨부] 피해 현황 사진

□ 위치도



□ 피해 사진





전기차 통학차량 안전 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 배터리 성능 유지를 위한 평상시 관리법

- 충전계 게이지 30 ~ 90% 수준을 유지하기 ('L(부족)'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
- 차량에 큰 충격이 발생한 경우(특히 차량하부 충격 시), 서비스 센터(지정 정비사)에서 점검받기
- 차량의 주황색 케이블은 300V 이상의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 충전 중 세차 금지 및 엔진룸, 전기모터, 충전 접속 부위, 고전압 배터리 세차 금지

● 전기차 운행 시 주행거리 향상 방법

- 과도한 냉난방 사용을 줄여 차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 에코모드로 운전하고, 제동 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는 회생제동 가능 활용하기
 - 급가속, 급제동 줄이기
 - 히터보다 열선 이용하기
 -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해 충전 중 예약 공조 활용하기
- ※ 전기자동차는 내부 연소 엔진이 없기에 소음이 작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보행자가 자동차 운행 소리를 듣지 못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행자 동행이 빈번한 이면도로 등에서 운전 주의

● 전기차 안전하게 충전하는 법

- 반드시 지정된 국가표준인증 충전기와 어댑터를 사용해야 하며, 커넥터 연결상태 확인하기
- 젖은 손으로 충전기 사용은 금물이며 우천 시 충전 장치에는 수분 유입 주의하기
- 충전 중 충전 커넥터를 임의로 분리하지 않고 충전 종료 버튼으로 종료하기
- 충전 케이블 피복 손상, 커넥터 파손 등 안전상태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할 경우에는 멀티탭이나 연장선사용하지 않기

● 전기차 사고 발생 시 긴급상황 대처법

긴급상황	대 처 법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문 열고 환기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 ※ 차량 내 전선과 특히 고전압 케이블(주황색)은 만지지 말 것 ※ 평소 비상시 문여는 방법 숙지
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전 중일 경우, 충전기측 긴급전원 차단 스위치를 눌러 전기공급 차단 후 119 신고 ▶ 소규모 화재(연기 등)일 경우, 전기화재용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 진압 및 안전한 곳에 대피하여 119신고 (소화기는 바람을 등지고 사용)
침수	<p>즉시 시동을 끄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후 신고</p>
견인	<p>네 바퀴가 모두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견인 (부득이 두 바퀴 견인 시에는 구동되는 바퀴는 고정하여 견인)</p>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매뉴얼



6장

참고자료(부록)





6장

참고자료(부록)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 매뉴얼



통학버스 업무담당자 및 교육부, 유관기관 연락처

● 통학버스 업무담당자 현황

연번	기관명	담당부서명	전화번호
1	본청	안전총괄담당관	02-399-9354
2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	02-2210-0423
3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	02-390-2263
4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	02-2165-2175
5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	02-3499-6837
6	중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	02-708-6598
7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	02-3434-4307
8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	02-2600-0927
9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	02-3015-3345
10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	02-810-1763
11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	02-2286-3698
12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	02-944-9465

● 교육부

기관명	담당부서명	전화번호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044-203-6658 044-203-6660

● 유관기관

기관명	담당부서명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재난상황관리과	02-2133-0052 02-2133-0090~2(상황실)
서울특별시 112 종합상황실		02-6150-1701
서울특별시경찰청	위기관리경호과	02-700-5611
	치안정보상황과	02-700-5281
	경비과	02-700-5522
	청소년보호과	02-700-2872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법률 제21016호, 경찰청 소관)

[시행 2026. 1. 1.]

제2조(정의)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⑥ 차마(자전거등은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거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 2)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13.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른 것
-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⑥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①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및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대안학교·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은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고용주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경찰청 소관)

[시행 2026. 1. 2.]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전문개정 2013. 6. 28.]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 가.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 등”이라 한다)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 나.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제1호가목·나목(회사는 제외한다) 및 제1호의2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는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1.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2.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3.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4. 그 밖에 운전 및 승차·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해야 한다.

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등 내부의 잘 보이는 곳
2.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591호, 경찰청 소관)

[시행 2025. 12. 2.]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버스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2. 학교 등기·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
- ②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④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어린이 보호표지) 영 제31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는 별표 14와 같다.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가 영 제31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7조의2(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법 제53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말한다.

제37조의3(보호자 동승표지) ① 법 제53조제6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란 별표 15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우측 옆면 승강구 부근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제37조의4(안전운행기록)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기록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5(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 및 영 제31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에 대해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자료를 기초로 직접 제작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매년 교육 인원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④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안전교육 통지서에 따라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개별적인 통지가 곤란한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일반적인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를 공지한 것으로 통지를 대신한다.

⑤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운영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르고,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6(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경찰서장은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어린이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성명 및 해당 어린이교육시설의 명칭
2. 제1호에 따른 사고의 일시·장소 및 위반 항목
3. 제1호에 따른 사고 관련 자동차의 등록번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21180호, 국토교통부 소관)

[시행 2025. 12. 2.]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 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교육의 이수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 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7의3.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7의4.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나.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8.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

③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거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8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 ③ 시·도지사등은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起算日) 및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25호, 국토교통부 소관)

[시행 2025. 10. 23.]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⑤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⑥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9.>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 종	사 업 의 구 분		차 령
승용자동차	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2. 차령 연장요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 나.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Q&A

1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시설을 알고 싶어요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시설이 규정된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3호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

어린이통학버스의 어린이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3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통학버스의 규정이 적용되나요?



☑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어린이통학버스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4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재교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5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에 신고증명서는 어떻게 하나요?

- ☑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증명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신고증명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6 9인승 어린이통학버스에 몇 명 탑승할 수 있나요?

- ☑ 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봅니다.

7 차량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 구조·장치 변경 관련 내용(구조변경 승인신청서, 구조변경 전후 제원대비표, 구조변경 전후 자동차외관도, 구조장치 설계도 등)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하나요?

- ☑ 좌석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을 매일 기록하여 매 분기마다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학교안전지원시스템(<http://schoolsafes24.or.kr>) 이용

9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꼭 작동시켜야 하나요?

- ☑ 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항에 의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반드시 작동시켜야 합니다.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시 과태료 3만원, 미작동 시 승합차 기준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하차확인장치 불법개조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0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많은데, 예외 없이 멈춰다 가야 하나요?

- ☑ 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근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정지선 앞)에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11 동승보호자는 꼭 동행해야 하나요?

- ☑ 네. 2017년부터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12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으면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 ☑ 아니요. 2022년부터는 횡단보도를 통행중일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도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에게 통행을 양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회전 시에는 반드시 시야확보를 한 후에, 건너려는 사람도 없는지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했는데 생각보다 벌점과 범칙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가요?

- ☑ 네.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음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는 벌점 및 범칙금·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부과됩니다.

1. 속도위반(20km/h 이하의 속도위반인 경우 벌점 15점)
2. 신호·지시위반
3. 보행자 보호 불이행
4. 통행금지 제한 위반
5. 불법 주정차(어린이보호구역은 범칙금·과태료 3배)

14 교육시설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비정기적인 야외 활동 등에만 사용하고 통학 용도로는 운행하고 있지 않는데, 이 경우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 ☑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의 주거지와 교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수준의 통학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정기적으로 오가는 수준의 통학에 이용하는'행위의 태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관할 경찰서(민원실) 어린이 통학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5 렌트카, 리스차를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나요?

- ☑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버스는 시설인허가자의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되어있거나 전세버스와 계약을 통해야 가능합니다. 렌트카와 리스차는 시설인허가자의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될 수 없어 어린이통학버스가 될 수 없습니다.

16 어린이 통학버스가 교통사고가 나서 수리 중입니다. 보험사의 처리비용으로 렌트차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린이통학버스로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수리 기간에도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자가 다른 어린이 통학버스 차주와 계약을 통해, 차량의 공동명의자가 되어 새로운 신고필증을 신청, 발급받아 운행하거나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계약(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은 자동차와 계약)을 해서 운영자가 새로운 신고필증을 신청, 발급받아 운행
- ※ 주의: 수리 기간에 일반차량으로 운행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112신고(경쟁업체 등의 미신고차량 신고) 시 규정된 법률 근거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17 어린이 통학버스도 차령제한이 있나요?

- ☑ 네, 있습니다. 아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차령제한이 있습니다. 소관부서는 시군구청 자동차정책과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통학버스의 차령은 11년으로, 정기검사를 통해 13년 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8 어린이보호차량 표지를 통학버스에 부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이 있나요?

- ☑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만든 사람들



발간위원

총괄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기획 안전총괄담당관 통학안전관리팀장 권택근

안전총괄담당관 통학안전관리팀 주무관 백명조

담당 안전총괄담당관 통학안전관리팀 주무관 오은미

제작·검토 위원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수 송선정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수 최종택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수 이경우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 교통안전과 경장 최승원

서울경찰청 해화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이원웅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통학안전관리팀 주무관 오은미

발행일 2026년 2월

발행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